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서기관·기술서기관”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9퍼센트”를 “12퍼센트”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13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로 하고, 서기관 또는 총경 2 다음에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로 하며,

별표 14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

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로 하며,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로 한다.

별표 15 고위공무원단 2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로 한다.

별표 16 고위공무원단 2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② (생략) ③ 미래치안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화기반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총경으로, 과학치안산업팀장은 <u>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u> , 데이터정책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u> 보한다. ④ ~ ⑧ (생략)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u>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114명(<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u> ,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10 <u>퍼센트</u> ----- ----- -----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5명, 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2명, 전산주사보 2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26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 행정서기보 25명, 전산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3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947명(행정주사 38명, 행정주사보 116명, 공업주사보 36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간호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3명, 행정서기 395명,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8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58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8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9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12퍼센트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6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
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